

# 畜産業協同組合法 (上)

(제 1 조~제 64조까지 전문게재)

양계인의 소망이 생산물의 가격안정에 있고, 제도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로 협동조합도 생각해 보아 왔다.

81년 1월 1일부터 발족되는 협동조합의 기본이 되는 협동조합법을 2회에 나누어 전문 게재코져 한다.

앞으로 축종별 전문조합인 양계협동조합도 탄생하여 그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져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되는대로 이도 본지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.

(畜協中央會)

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법은 양축가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육성하여 축산업의 진흥과 그 구성원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등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축산업”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·증식·채란·착유등을 포함한 광의의 축산경영업을 말한다.

2. “양축가”라 함은 스스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家口主 개인을 말한다.

②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축산업과 양축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3 조 (명칭등) ① 축산업협동조합 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은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.

②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은 그 지역명을 붙인 축산업협동조합의

명칭을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은 그 지역명과 업종명을 붙인 협동조합의 명칭을, 중앙회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지역조합은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을, 업종조합은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을, 중앙회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말한다.

④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⑤ 항의 규정을 위반한 단체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.

제 4 조 (法人格)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.

제 5 조 (住所)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.

제 6 조 (최대봉사의 원칙)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구성원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한 봉사를 목적으로 하고, 일부 구성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

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 
제 7 조 (정치에의 관여금지) 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8 조 (점직금지 등) ①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과 직원은 공무원(선거공무원을 포함한다)을 점직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과 직원은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9 조 (정부의 지원 등) ① 정부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, 그 시설장비 등의 이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회장은 조합과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 10 조 (다른 법률의 적용 등) ① 중앙회의 실행사업에 대하여는 은행법 및 한국 은행법을 적용한다. 다만, 은행법 제 6 조·제 8 조·제 10 조 내지 제 13 조·제 15 조·제 16 조·제 17 조의 2 제 20 조 내지 제 22 조·제 24 조 내지 제 26 조·제 27 조 제 4 호·제 8 호·제 10 호·제 30 조 제 5 호 제 34 조·제 35 조·제 38 조 내지 제 41 조와 이에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조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조합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이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 155 조 내지 제 16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1 조 (다른 법률의 적용배제)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·창고업법·농업창고업법 제 18 조·무역거래법 제 3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# 제 2 장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

### 제 1 절 목적과 설립

제 12 조 (목적)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(이하 이

장에서 “조합”이라 한다)은 조합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생산력의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·사회적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13 조 (구역) ① 조합의 구역은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, 같은 구역내에서는 2개 이상의 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.

② 주무부장은 조합의 구역변경이 지역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원의 사업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③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 14 조 (설립) 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,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.

② 설립준비회의 의사는 출석한 양측가(발기인의 과반수가 포함되어야 한다)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창립총회의 의사는 개의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조합의 정관은 주무부장이 정하는 정관예에 의하여 작성하고 다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.

④ 발기인중 제 1 항의 설립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경위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

제 15 조 (정관의 기재사항)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구역
4. 사무소의 소재지
5.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·탈퇴 및 제명
6. 조합원의 관리와 의무
7. 출자 1座的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수한도

및 그 납입방법과 지분계산

- 8. 경비부과와 과태금의 징수
- 9. 적립금의 금액과 적립방법
- 10.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
- 11. 회계년도와 회계
- 12. 사업의 종류와 집
- 13. 총회 기타 의결기관
- 14. 임원의 정수와 임면
- 15. 공고의 방법
- 16. 부칙으로 정할 사항

가.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

나. 설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한 때에는 그 출자재산의 명칭·수량·가액과 출자자의 주소 성명 및 이에 대한 환가출자좌수및 환매특약조건

다. 설립 후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·수량·가액과 양도인의 주소·성명

제16조(사무인계와 출자납입) ① 발기인이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장이 사무를 인수한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의 납입기일내에 출자목적의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·등록 기타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조합의 성립과 인가의 취소) ① 조합은 규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② 조합이 설립인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당해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### 제2절 조합원과 출자

제18조(조합원의 자격) 조합은 그 구역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둔 양측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조합원

으로 한다.

제19조(준조합원) ①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역내에 주소 또는 주사업장(등) 양측가가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단체 또는 법인을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.

② 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.

③ 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20조(출자와 책임) ① 조합원은 출자 1座 이상을 가져야 한다.

② 출자 1座의 金額은 均一하여야 하며, 1座의 金額 및 1인이 가질 출자좌수의 최고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③ 조합원의 출자는 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.

④ 조합원은 출자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相計로써 대항하지 못한다.

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.

제21條(回轉出資) 조합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 이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22조(지분의 양도·양수와 공유금지)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락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.

② 비조합원이 지분을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의한다.

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한다.

④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.

제23조(경비등의 부과와 징수) ①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경비·과태금을 부과하거나 사용료·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·과태금·사용료·수수료의 지급에 있어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.

제24조(의결권·선거권과 피선거권) 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·선거

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
제25조(의결권 선거권의 대리행사)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②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어야 하며,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.

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6조(가입) ①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부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조건을 붙일수 없다.

② 새로이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출자납입을 하여야 한다.

③ 조합은 조합원수를 제한할 수 없다.

④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가입의 예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할 수 있다. 다만,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호주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가입의 예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한다.

⑤ 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이를 준용한다.

제27조(탈퇴) ① 조합원은 60일 전에 예고하고 회계년도 말에 탈퇴할 수 있다.

②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연탈퇴한다.

1.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

2. 사망한 때

3. 파산선고를 받은 때

4. 禁治産宣告를 받은 때

③ 제2항 제1호의 자격상실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제28조(제명)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
1. 1년이상 조합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

2. 출자 및 경비의 납입,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
3. 기타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

② 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개시 10일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29조(지분환급 청구권과 환급정지) ① 탈퇴한 조합원은 그 탈퇴한 년도가 경과한 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청구권은 탈퇴년도 말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.

③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채무가 있을 때에는 그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

제30조(탈퇴조합의 손실액 부담)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이 그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의 부담으로 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제31조(의결취소의 청구) ① 조합원은 총회(창립총회를 포함한다)의 소집절차·의결방법·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·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일 또는 선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의결·선거 또는 당선외의 취소를 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의결·선거 또는 당선을 취소하여야 한다.

### 제3절 기 관

제32조(총회)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.
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
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.

제33조(총회의 의결사항) ① 다음 각호의 사항

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1. 정관의 변경
2. 조합의 해산·합병 또는 분할
3. 조합원의 제명
4. 임원의 선출과 해임
5.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
6. 결산보고서의 승인
7.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
8.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중앙회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
9.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.

제34조(총회의 소집요구) ① 조합원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 1항의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조합장은 2주일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 2항의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감사가 제 3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 1항에 의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며, 이 경우 조합원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5조(조합원에 대한 통지) ①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통지를 할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으로 한다.

② 총회소집통지는 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전일까지 통지한다.

제36조(총회의 개의와 의결)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33조제 1항 제 1호 내지 제 3호의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

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.

② 제 1항의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37조(의결권의 제한) ① 총회에서는 제3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고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조합과 조합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는 그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.

제38조(총회의 의사록)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고, 의장과 총회에서 정한 3인이상이 기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제39조(총대회) ① 조합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할 총대회를 둘 수 있다.

② 총대는 조합원이어야 하며 총대의 정수는 10인이상 100인이하로 한다.

③ 총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임기가 만료하는 년도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되는 날까지 임기는 연장된다.

④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총대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⑤ 총회에 관한 규정은 총대회에 이를 준용한다.

제40조(이사회)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1. 조합원의 자격심사
2. 법정적립금의 사용
3. 차입금의 최고한도
4.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
5. 간부직원의 任免
6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

- 7. 사업집행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(업무규정의 제정·개폐를 포함한다)
- 8.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
- 9.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
- 10. 기타 조합장이 부의하는 사항

-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- ⑤ 전무 또는 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⑥ 이사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1조(임원의 정수와 선출)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, 이사 3인이상 7인 이하와 감사 2인을 둔다.

- ② 조합장·이사·감사는 그 조합의 조합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③ 임원의 선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명·비밀투표로 행한다.
- ④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.

제42조(임원의 직무)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,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- ② 이사는 조합장이 미리 정하는 순위에 따라 조합장에게 사교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, 闕位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를 감사한다.
-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감사는 총회·총대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43조(감사의 대표권) ① 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.

- ②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.

제44조(임원의 임기)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설립당시의 조합장·이사·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, 1년을 초과할 수

없다.

② 임기가 만료하는 연도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되는 날까지 임기는 연장된다.

제45조(임원의 자격제한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-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- 2. 미성년자
- 3. 한정치산자 및 금지산자와 破産者 또는 公民權이 박탈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에 의하여 罷免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② 임원중에 제1항의 사유가 있음이 발견 또는 발생된 때에는 당해임원은 자연해임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이 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
제46조(선거운동의 제한) 누구든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·響應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지 못한다.

제47조(임원의 겸직금지) ① 조합장은 그 조합(업종조합을 포함한다. 이하 조에서 같다)의 監事·理事 또는 職員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감사는 그 조합의 이사 또는 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48조(임원의 의무와 책임) ① 조합의 임원은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

③ 임원이 결산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등기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에도 제 2 항과 같다.

제 49 조 (서류비치의 의무) ① 조합은 정관·총회의사록·조합원명부 및 결산보고서 등의 서류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 1 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.

제 50 조 (임원의 해임) ①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에 의한 해임은 해임의 이유를 제시 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 51 조 (간부직원) ① 조합에 간부직원 으로서 전무와 상무를 둘 수 있다.

② 간부직원은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.

③ 전무는 조합의 업무를 統轄處理하며, 상무는 전무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담하고 전무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며, 전무가 결원된 때에는 조합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제 1 항의 간부직원의 자격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52 조 (민법·상법 등의 준용) ①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 35 조·제 63 조와 상법 제 382 조 제 2 항·제 386 조 제 1 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.

②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하여는 상법 제 11 조 제 1 항 및 제 3 항·제 12 조·제 13 조 및 제 17 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 226 조 내지 제 228 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.

#### 제 4 절 사 업

제 53 조 (사업의 종류)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.

1.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(축산에 관한 기술 향상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교육 또는 생활 개선)과 문화향상에 관한 시설의 설치
2. 축산계에 관한 지도와 육성
3. 복리후생사업
4. 가축의 개량·증식·방역 및 진료
5. 구매사업 (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·운반·보관·가공과 공급)
6. 판매사업 (조합원이 생산한 물자의 운반·보관·처리·가공·검사와 판매)
7. 보관사업
8. 이용·운송사업
9. 축산물과 사료의 처리·가공 및 제조사업
10. 축산물작업장의 설치·운영
11. 가축시장의 개설 및 운영·관리
12. 신용사업

가. 조합원의 예금·적금의 수입

나.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

다. 내국환

라. 국가·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

13. 조합원에 대한 공제사업 및 가축공제
14. 다른 조합(업종조합을 포함한다)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또는 그 대리업무
15. 중앙회가 위촉하는 사업
16.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
17. 정부보조사업
18.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
19. 단체협약의 체결
20. 제 1 호 내지 제 19 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
21. 기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

② 조합은 제 1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

③ 제 1 항 제 12 호의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조합이 제 1 항 제 16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과 사업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⑤ 수개의 조합이 공동으로 제 1 항 제 6 호 및 제 9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회장

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⑥ 제 1 항 제 13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제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.

제 54조 (비조합원의 사업이용)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의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.

③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(업종조합을 포함한다)과 그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.

제 55조 (다른 기업에의 출자) ① 조합은 제 53조의 사업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.

② 조합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 제 5 절 회 계

제 56조 (회계년도) 조합의 회계년도는 정관으로 정한다.

제 57조 (회계)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이외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.

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·융합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한다.

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또는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이외의 사업부문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은 주무부장관이,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은 중앙회장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58조 (사업계획과 수지에산) ① 조합은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에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0일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59조 (여유자금의 예치) 조합의 업무상의 여유자금은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.

제 60조 (법정적립금·사업준비금과 이월금) ① 조합은 회계년도마다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(이하 "법정적립금"이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②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.

③ 조합은 제 53조 제 1 항 제 1 호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.

제 61조 (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) ① 조합은 매회계년도결산의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·사업준비금·법정적립금·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.

②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 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·사업준비금 및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 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이 정하는 율에 의하여 납입출자액에 따라 행하고 잔여잉여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사업이용분량의 비율에 의한다.

제 62조 (익금의 적립) 조합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1. 減資에 의한 차익
2. 유형고정자산의 受贈益
3. 자산재평가차익
4. 합병차익

제 63조 (법정적립금의 사용제한)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.

1.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
2. 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

(다음호로 계속)